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3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김준혁 · 강경숙
박균택 · 김 윤 · 박지원
김승원 · 황명선 · 신정훈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.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, 학부모, 변호사,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,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.8%이고,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.

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%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,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(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운영”을 “구성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-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·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·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· 운영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·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 · 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③</u> 그 밖에 시 · 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④</u> ----- ----- --- <u>구성 및 운영</u> --- -----.